

보험업법 위반자 제재 관련 청문조서 열람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법을 위반한 보험설계사 제재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조서 열람 기간·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정성원	770915-*****	전라남도 목포시
이판금	570909-*****	경기도 고양시
백서영	871123-*****	경기도 평택시
안혜진	830418-*****	경상남도 통영시
김재수	570216-*****	광주광역시 동구
최승용	801028-*****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미진	861208-*****	경상남도 창원시
우미진	650305-*****	울산광역시 북구
강숙이	670321-*****	광주광역시 북구
나준호	841011-*****	경기도 수원시
강길순	700915-*****	경기도 수원시

2. 서류의 명칭 : 청문조서 열람 통지

3. 서류의 내용

가. 청문조서 열람 통지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을 부과하기에 앞서 보험업법 제86조 및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출석여부, 진술요지 등을 기록한 청문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금융위원회 보험과에서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 열람·확인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보험과, 유선(02-2100-2965), 전자메일(soonsiee@korea.kr) 신청
- 열람·확인 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14일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